■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1, 1, 21,>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 ] 영문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 ]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 ] 운전면허증갱신발급(적성검사)연기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	·일시		발급확	인			처리기긴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사 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3.5 cm × 4.5 cm			
	전화번호			전자우편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주소								촬영한 것)		
갱신·적성 검사 연기	신청 사유	해외 체류	<del>-</del> [ ]		재해 또는	<u> </u>	대난[ ]	질병	또는 부	₽상[	]
		구속[ ]			군복무[	]		기타[	]		
	연기 기간	시작일	년	월	일		예상종료일	<u>]</u>	년	월	일
재발급	신청 사유 분실[ ] 훼손·오손[ ] 기타[ ]										
	분실 일자										
영문 [ ] 국제 [ ] 운전면하증 발급	성명 (영 <del>문</del> )	성									
		이름									
	발급사유(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작성합니다)										
신청차종	[ ]자동 [ ]수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도로교통공단)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 의 사 항

- 1.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2.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내에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을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	부장	장장
영수필증 첨부란			
첨부란			

신청사무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제2종 운전면허 갱신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운전면허증 재발급	※ 신청인 제 출서류 중 신분증명서	신분증명서		「도로교통 법」제139 조에 따라 도로교통	
운전면허증 갱신(적성검사) 연기	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 다: ※ 대리 신청 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ol> <li>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li> <li>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ol>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병적증명사(군복무중임을 이유로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단이 경 찰청장의 승인을 받 아 결정・ 공고하는 금액	
영문운전면허증 발급	신분증명서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500원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제1항 단서, 제80조제1항 단서, 제81조제1항 단서, 제83조제1항 단서, 제8 5조제1항 단서 및 제9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 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성검사(갱신)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새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78조제4항, 제80조제3항 및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기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해야 합니다.